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7898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9288	박상웅의원	2025.03.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1169	박성민의원	2025.06.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을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보유하여야 한다”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기술이전·사업화”를 “기술 또는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24조제4항 전단 중 “기업”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고”로, “있다”를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을 “절차·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 비용의 수취,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5조의8제1항 중 “제4호부터 제7호”를 “제6호부터 제11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4항 및 제16조의9제1항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라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생략)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 <후단 신설>

1. ~ 6. (생략)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생략)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 기술에 해당할 것

③ (생략)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신설>

--.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100분의 30-----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 ① (생략)
-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 2. ~ 5. (생략)
- <신설>

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

- 1. -----  
-----  
-----기술 또는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
- 2. ~ 5. (현행과 같음)
- 6.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신 설>

⑤ ·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 · 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  
-----절  
차 · 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  
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  
-----제7항-----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삭 제>



